

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

과태료 부과
1천만원 이하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민특법)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.



!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,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(임대차계약 신고,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 사용 포함)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,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,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기간 2020년 3월 2일(월) ~ 2020년 6월 30일(화) (4개월 간 시행)

신고대상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

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,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

신고서류 자진신고서, 임대차계약 신고서, 표준임대차계약서

신고방법 렌트홈(<http://www.renthome.go.kr>)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(시·군·구청) 방문접수

*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“임대차계약 미신고” 및 “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”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

LH 렌트홈 콜센터 (시스템 031-719-0511, 제도 1670-8004)

*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(<http://www.renthome.go.kr>)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청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